

#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

소관부서 : 수도과

제정 2012·8·8 조례 제 942호  
일부개정 2016·5·12 조례 제1232호  
일부개정 2017·6·30 조례 제1318호  
(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)  
일부개정 2018·12·31 조례 제1457호  
일부개정 2025·11·7 조례 제2296호  
(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 
조례의 일괄개정조례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지하수개발 · 이용자”란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(제13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· 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, 양도,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 ·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
- “지하수이용부담금”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· 이용하는 자에게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부과 · 징수하는 요금
- “유량계”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, 적산유량계, 순간유량계, 시간계 등

**제3조(지하수개발 ·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)**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·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 · 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

다. <개정 2025·11·7>

1.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 펌프(자흡식 자동펌프)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
2.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 수위측정관을 제외

**제4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)** 시장은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「지하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,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·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.

1.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·측정계획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2.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 시설
3.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4. 그 밖의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##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

**제5조(지하수 관리위원회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(변경수립)에 관한 사항
2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
3.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4.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

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수도과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25·11·7>

1.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2. 지하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(대학교수·전문가)
3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4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촉 해제)**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의 품의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고 판단되는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

**제8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,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⑤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9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**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 준수)**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3장 지하수특별회계

**제11조(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)**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당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2조(관리·운영)** 시장은 특별회계를 관리·운영한다.

**제13조(세입)**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30조의2의제2항1호에 따른 보조금
2.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
3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4. 차입금
5.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
6.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
7. 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

**제14조(세출)**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
2. 법 제6조2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3.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
4.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
5.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·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
6.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

7.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
8.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
9. 그 밖의 지하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5조(사무취급 예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.

**제16조(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)**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·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
2.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경우
3.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자의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겸침유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,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.

⑤ 부담금 부과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, 10원 미만은 버린다.

**제17조(부담금 납입절차 등)**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부담

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**제18조(가산금)**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**제19조(부과액 조정 신청)**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)**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, 고지서 송달 등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③ 위탁업무의 범위, 위탁수수료 산정,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 제4장 과태료 처분

**제21조(과태료 부과)**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고,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4조를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8·12·31]

**제22조** 삭제 <2018·12·31>

**제23조** 삭제 <2018·12·31>

**제24조** 삭제 <2018·12·31>

**제25조** 삭제 <2018·12·31>

**제26조** 삭제 <2018·12·31>

**제27조** 삭제 <2018·12·31>

**제28조(과태료 수납부)**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, 수수료 및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

징수의 예에 따르고,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·6·30, 2018·12·31>  
[전문개정 2016·5·12]

**제3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·징수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·5·12 조례 제123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·6·30 조례 제1318호,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「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”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**제3조 생략**

부칙 <2018·12·31 조례 제145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·11·7 조례 제2296호,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5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6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7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8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9호서식] 삭제 <2018·12·31>

[별지 제10호서식]

과 태 료 수 납 부												
① 일련 번호	② 통지서 번 호	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	④ 독촉장 발부일	납부기한		⑦ 금액	납부의무자		⑩ 과태료 납부일	이의제기		비고
				⑤ 당초	⑥ 독촉		⑧ 성명	⑨ 주소		⑪ 이 의 제기일	⑫ 법 원 통보일	